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안)

[2016.10.19. 수정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올바른 감정을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국내 주얼리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인증마크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에서 별도로 정한 로고로서 상표등록을 마친 것을 의미한다.

2. 단체인증 참여감정원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전문적인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성적서(감정서)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단협으로부터 획득한 개인사업자(또는 법인)를 의미한다.

제 2 장 운 영

제 3 조 제도의 운영

1. 본 인증마크제도는 단협 산하의 감정연구지원 단체인증 특별위원회(이하 감정특위)에서 운영한다.
2. 감정특위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단협의 승인에 의하여 임명된다.
3. 감정특위 위원구성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4. 위원장이 위원의 1/2을 직접 임명하고, 1/2은 단협에서 추천한 자 중 지명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6. 감정특위는 독립 조직으로 운영되며 독자적인 결정권을 보장받는다.

제 4 조 감정특위의 운영 및 업무

1. 감정특위 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감정특위는 매월 1회 정기회의, 위원장의 소집 요구 또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경우 소집되며,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의결한다.
3. 감정특위는 원기 관리 및 인증 제도 운영을 담당하며 단협으로부터 총무, 재무,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4. 감정특위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1차 ‘다이아몬드 마스터 스톤 세트’의 보관 및 유지 상태 관리에 관한 업무
 - (2) 인증마크 관리 및 등록심사에 관한 업무
 - (3) 본 규정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관한 업무
 - (4) 인증 제도의 계몽,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업무
 - (5) 참여감정원 및 소비자의 고충 상담 및 회신에 관한 업무
 - (6) 기타 본 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업무

제 5 조 비밀 준수의 의무

감정특위 위원 및 관계자는 본 규정의 운영에 관해 직무상 얻은 비밀 또는 개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참여 감정원

제 7 조 등 록

1. 인증마크표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인증마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정특위에 제출한다.
2. 참여를 희망하는 감정원은 감정특위에서 등록 승인을 받아 등록하고(이하 참여 감정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감정특위는 신청서 접수 후 2주 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4.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된 참여감정원은 제 24 조에 정한 비용을 납부한 후 인증

마크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5. 신규 참여 감정원의 모집은 매 2년마다 한다.
6.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감정원은 모집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감정특위로부터 등록요건을 검증 받아야 한다.

제 8 조 등록 요건

인증마크표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해당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관리체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1. 시설요건

- (1) 다이아몬드 감정을 위한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의 보유(#1 감정장비 참조)
- (2) 일정 기준의 마스터스톤 보유 (#2 Master stones 요건 참조)
- (3) 보석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고의 보유
- (4) 도난과 분실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의 완비(경비시스템)

2. 인적요건

- (1)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보석감정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예; GG-GIA, HRD, FGA)을 소지한 3인 이상의 감정사를 보유해야 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필히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보석감정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2) 책임 감정사는 3년 이상 다이아몬드감정 경력 있어야 하며, 나머지 2인은 1년 이상 다이아몬드감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관리 요건

- (1) KSD 2371-1 및 2371-2을 기준으로 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커트 그레이딩은 단협 기준을 따른다.)
- (2) 사후 관리를 위하여 발행된 모든 감정서에 대한 내용을 5년간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등록의 갱신

1. 참여감정원의 등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등록 갱신을 할 수 있다.
2. 감정특위로부터 기한 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 종료 전에 등록 갱신비용의 선납에 의해 자동 갱신된다.

제 10 조 참여감정원의 의무 및 책임

1. 참여감정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고 당 참여감정원의 감정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2. 참여감정원은 인증마크 관리를 엄정하게 한다.
3. 참여감정원은 인증마크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참여감정원은 감정특위의 조사 등에 협력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 참여감정원은 감정특위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감정특위에 보고해야 한다.
6. 참여감정원은 감정된 다이아몬드를 감정서와 분리하여 비봉인 해야 한다.
7. 참여감정원은 주얼리 및 보석류 유통업을 겸업할 수 없다.
8. 참여감정원은 2개 이상의 감정원을 운영할 수 없다.
9. 참여감정원은 감정 의뢰된 모든 다이아몬드에 대해 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0. 참여감정원은 다이아몬드 감정 의뢰자에 대한 실명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참여감정원의 자격 정지 및 등록 해제

1. 참여감정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정지 또는 등록이 해제된다.
 - (1) 3회 이상 개선 권고를 받을 경우
 - (2)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 (3) 등록해제신청이 수리되었을 경우
 - (4) 갱신기한을 넘겨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5) 참여감정원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감정특위가 판단하였을 경우
2. 참여감정원의 자격이 정지 또는 등록 해제된 경우, 감정특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문서에 의한 자격 정지 또는 등록 해제 통보
 - (2) 자격정지 통보 및 인증마크의 회수 조치
 - (3) 관련 업계지, 잡지 및 기타 매체에 자격 정지 내용 공표
 - (4)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법률 등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제소 등의 조치
3. 등록 갱신 기한 전에 등록 해제를 원할 경우, 감정특위에 등록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정특위가 등록해제신청서를 수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 자격정지 및 등록해제에 동반되는 조치 및 의무
자격정지 또는 등록해제 된 참여감정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지 기간 중 인증마크의 사용 행위를 금지한다.
2. 등록해제 후 보유하고 있던 인증마크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인쇄물을 감정특위에 반납해야 한다.
3. 비록 등록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기간 중에 일어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참여감정원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자격정지 및 등록해제 시 인증마크 등록비 및 연회비 등 기 납부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13 조 참여감정원의 공개
감정특위는 등록을 마친 참여감정원에 대하여 참여감정원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인 증 마 크 의 운 영 및 관 리

제 14 조 인증마크의 형태
참여감정원이 사용할 인증마크의 형태와 크기는 감정특위에서 결정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 15 조 인증마크의 표시 방법
참여감정원은 감정특위에서 결정한 인증마크(홀로그램)를 감정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 16 조 인증마크 홀로그램 관리

1. 참여감정원은 인증마크 홀로그램의 사용현황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 보관한다.
2. 참여감정원은 매년 말에 인증마크 홀로그램 등의 관리 상황을 감정특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표시 대상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서로 한다.

제 18 조 검 사

1. 공정한 인증마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감정특위는 표시제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검사 대상은 참여감정원의 유통되는 다이아몬드 감정서 등으로 한다.
3. 검사는 감정특위에서 담당하며, 시료는 무작위 차출 방식을 채택하고 수시 검사 방법으로 한다.
4. 검사 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19 조 조 사

감정특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1. 인증마크의 사용 현황
2. 인증마크 개수 및 관리 상태
3. 인증마크 외부자 위탁여부 및 그 관리 상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개 선 권 고 및 불 복 심 사

제 20 조 개선 권고

1. 참여감정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감정특위가 인정하였을 경우, 검사 및 검사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리고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감정특위는 해당 참여감정원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한다.
2. 해당 참여감정원이 감정특위에서 고지한 개선기한 내에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때 감정특위는 해당 참여감정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21 조 불복 신청

1. 참여감정원은 개선권고, 자격정지 등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정특위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정특위는 접수된 불복신청에 대하여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적합여부를 심의하고 불복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불복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단협에도 통보해야 한다.

제 22 조 단체인증특별심사위원회

1. 본 규정의 운영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단체인증특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두어야 한다.
2. 심사위 위원은 7인(감정특위: 3인, 외부인사: 1인, 단체인증감정원: 3인)으로 구성하고 단협외 승인을 얻어 집행 한다.
3. 심사위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감정특위의 위탁으로 재판에 관한 적정, 부적정의 심의, 결의
 - (2) 참여감정원에 의한 불복신청사유의 심의
 - (3) 자격정지 및 등록해제 등의 제제에 관한 심의
4. 심사위의 의결은 심사위원정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심사위는 제제 등의 심의, 의결에 관해 해당 참여감정원을 출석시켜 불복의 이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6 장 소 비 자 상 담

제 23 조 소비자 상담소 설치

감정특위위원회로부터 소비자상담원을 선출하여 다이아몬드에 관한 소비자로부터의 질문이나 이의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한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관 리

제 24 조 재정 조달

본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항목에 대한 수입을 충당한다.

1. 등록 심사를 마친 참여감정원으로부터 인증마크 등록비: 일백만원(₩1,000,000)
2. 연회비: 일백만원(₩1,000,000)
3. 갱신을 원하는 참여감정원으로부터 갱신수수료: 오십만원(₩500,000)
4. 마스터 스톤 인증 심사비: 의뢰하는 다이아몬드 개당 오만원(₩50,000)
5. 정밀 분석검사를 의뢰할 경우 그 경비는 의뢰인이 지불

6. 인증마크 홀로그램비: 개당 백원(W500)

7. 기타 수입

제 25 조 회계 관리

본 규정의 운영상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관리한다.

1. 경리는 감정특위에서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2. 감정특위 위원장은 단협에 연 1 회 회계보고를 하고 단협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3. 단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계 및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 26 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에 종결한다.

제 8 장 규 정

제 27 조 규정의 변경

1. 본 규정은 필요 시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2. 규정의 수정 및 변경은 감정특위 위원 과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찬성에 의하여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첨부 # 1.

감정원 입회 기준

1. 다이아몬드감정 경력을 보유한 보석감정사 3인 이상이 근무하는 감정원
(책임 감정사는 다이아몬드감정 경력 3년 이상, 나머지 2인은 1년 이상)
2. 원기위원회에서 검증된 다이아몬드 컬러 마스터 스톤 세트
3. 현미경 (3대 이상)
4. 보석용 실물 촬영기
5. 다이아몬드 라이트
6. 프로포션 측정장비 (예 : 메가스코프, 다이아멘션 등)
7. 자외선형광기구
8. 저울 (오차율 1/1,000ct 이상)
9. 기타 감정장비 및 보조기구

첨부 #2.

마스터스톤(masterstones; 기준석)의 요건

A. 색등급을 위한 마스터스톤

원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터스톤

1. 크 기 : 0.30ct 이상
2. 수 량 : 7개 (E. F. G. H. I. J. K.) 이상
3. 클래리티 : 교정시력으로 내부특징이 보여서는 안 됨
4. 형 광 성 : 약함(Faint) 보다 강해선 안 됨
5. 형 태 : 라운드 브릴리언트 형태
6. 마 무 리 : 최소한 Good
7. 프로포션 : Good 범주 내
8. 색 상 : 황색계열
9. 하나의 세트에 속해있는 모든 기준석들은 중량, 연마비율이 유사하여야 하고 그들의 형태가 같아야 한다.

B. 형광 기준석

1. 기 준 : Faint, Medium, Strong 강도의 최저 형광치에 위치하며 청색 형광을 띠는 것이어야 함
2. 크 기 : 0.10ct 이상
3. 수 량 : 4개 이상
4. 형 태 : 라운드 브릴리언트 형태